
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2조에 제4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운반용기 설계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, 외국에서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의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국가의 설계승인서 유효기간을 적용한다.

⑤ 제4항의 설계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60일 이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2조의2(운반용기의 변경승인 신청)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반용기 설계승인의 연장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1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6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설계승인부터 적용한다.

신,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2조(운반용기의 설계승인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12조(운반용기의 설계승인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운반용기 설계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 로 하되, 외국에서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의 경우 5년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국가의 설계승인서 유효기간을 적용한다.
<u><신설></u>	⑤ 제4항의 설계승인의 유효기 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60일 이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.
<u><신설></u>	제112조의2(운반용기의 변경승인 신청)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